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역 건설업계 현안사항 보고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9. 2. 9(월) 18:30 ~ 21:00

■ 장 소 : 길조한정식 3층 ☎ (766-4061)

■ 참석자 : 23명

- 대구광역시(7명)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대목 건설방재국장, 박대녕 도시주택국장, 정명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황재찬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식 도시공사사장, 권오수 건설산업과장
- 우리시회(16명)
 - 이홍중 회장, 조중수 감사, 도재덕 대의원, 전주호 대의원 및 간사 11명

■ 건의사항 및 답변 요지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수주확대 건의

- 지역업체 70% 참여 목표치 제시, 지자체 시행 및 발주 추진, 지역업체 공동도급 배제제 도입, 최대한 분할발주 등

(답변) · 중앙정부는 4대강추진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조만간 대구시도 낙동강개발계획을 마련 중앙에 보고할 예정

- 하상정비는 국토부가 밑다리도 주변 시설물은 대구시민이 계속이용하게 되므로 대구시가 시행, 직접발주토록 주장할 방침이며 최대한 공사물량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할 것임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황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협조건의

- 실적만점 1배수준으로 하향, 공동도급평가방법 개선, 지자체가 지역제한공사 낙찰결정기준 결정권 행사등

(답변) · 대구시도 적극 공감하는 시안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 요구 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협회에서도 힘을 합쳐야 할 것임

○ 적정원가 계상 발주 건의

- 자체발주, 실적공사적용지침 준수, 법정 이윤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제경비율등을 준수하여 적정한 이윤 보장

(답변) · 건의내용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도시철도 3호선 공사비도 조달청 식감후 조정하여 일부 상향되었음

대구시, 공공건설공사 적정이윤 보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간담회에서 우리시회가 회원사의 적자 시공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요청한 “**적정공사원가 계상 건의**”를 반영하여

대구광역시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지나친 공사비 삭감으로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지역업체의 이윤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각 부서, 본부, 구·군청등 산하기관 및 교육청을 비롯하여 조달청, 주공, 토공등 지역의 모든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원가 계상과 부득이 삭감시 내역 공개**’를 협조요청(2. 11)하였다.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황에 따른 추진 동향

지난 2.4(수) 시도회장회의에서 지자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 확대 대상금액을 100억원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연명 결의함에 따라 본회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100억미만으로 조정하여 주도로 재정부, 행안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수정의견 제출한 결과(09.2.3)

행안부는 협회의견을 수용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100억미만으로 수정제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100억미만으로 수정의결 함(2.12)

※ 2년경과 후 대상금액은 70억원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입법예고대로 150억미만으로 하되 2년간 한시 적용기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2년경과 후 대상금액은 추후 재논의

한편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며 3월 초에 시행 예상되고 있음

지자체발주 등급제한공사 시공실적 만점기준 하향

행정안전부는 회계에규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등급제한공사 평가기준 개선, 시공실적 증명방법의 간소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시범운용 등을 도입하여 2.1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추정가격 300억미만 100억이상인 P·Q외의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최근년도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만점기준 완화
(종전) 150% 이상시 3.0(만점) → (개정) 100% 이상시 3.0(만점)
100% 이상시 2.7 → 75% 이상시 2.7

■ 등급제한공사 평가기준 개선

- (단서신설)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실적(100% 인정)에 대표자 이외의 실적(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합산하여 평가

■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단서신설)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실적계수 산정시 실적배수를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1.2배로 완화

■ 시공실적 증명방법의 간소화

- (종전)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되,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관련협회의 증명서로 심사 가능
→ (개정)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관리계획평가방법 명확화

- (단서신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 평가항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무비 적용기준율(설계서상의 노무비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 및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적정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의 적용 범위

-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 중 건설법령에 의하여 점업제한이 폐지된 공사에 적용 가능
- 전문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주계약자의 책임 경감

- (종전) 주계약자가 전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개정) · 1차적 : 구성원 각자 자신의 부담부분
· 2차적 : 구성원의 연대보증인(보증기관)
※ 주계약자의 책임은 최최(3차)

■ 주계약자에게 계획·관리·조정 권한 부여

- 주계약자에게 재시공지시권 부여
- 주계약자에게 자재 및 장비조달의 일원적인 관리 권한 부여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지체·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구성원의 공동경비항목 구체화

- 공동경비 등은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종합관리 및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 및 분담방법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제3장[별첨3] 제10조 제2항)

■ 시행일

- '09. 2. 1 시범운영 후 2010년 전면시행
- 시범운영 지자체(16개) =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과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9.1.28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므로 회원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 발주자

- ① 원도급자·하도급자 대금 지급계좌 사전파악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
- ②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도급자의 수령내역 상호 비교·확인
-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 지급일시 상이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합산액과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상 하도급대금이 일치**하는지 확인
※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소관 국토관리청에 통보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 원도급자

- ① 공사현장별 하도급업체 현황 및 대금지급 방법(지급주기·절차·형태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원도급자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발주자에 통보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
- ② 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시 하도급대금 지급후 **5일 이내 발주자에 지급내역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계좌, 지급확인 가능서류 통보
※ 원도급자 통장 출금내역에 하도급자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FAX 전자메일, 서면 등으로 통보

■ 하도급자

- ① 하도급대금 수령방법(지급주기·절차·형태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하도급업체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발주자에 통보
- ② 하도급대금 수령시 수령후 **5일 이내** 발주자에 수급내역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통보
※ 통장 입금내역에 원도급자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FAX, 전자메일 서면 등으로 통보

2차실적(재무제표등) 및 하도급직불실적 신고 안내

- 2009회계년도 기본회비 동시 수납 -

지난 2. 15일까지 접수받은 공사실적신고에 이어 재무제표등 경영 상태에 대한 실적신고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며 아울러2009회계년도 협회 기본회비도 동시에 수납한다.

■ **접수기간** : 2009. 4. 1(수) ~ 4. 15(수)

■ **접수대상** : 1차 공사실적 신고를 필한 회원사

■ **접수처** : 우리사회 사무처

■ **신고서류**

- **정본철** : 표지II+재무제표 및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 재무제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
 -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는 공인회계사 확인 받아 제출
 - ※ **반드시 공제납부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세액공제조정신청서 및 명세서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게 신청할 것**
- **부분철** : 협회소정서식
 - 반드시 단위에 유의하여 전산입력 할 것
 - 우리사회 사무처에 서류 신고후 반드시 전산상으로 본회에 송신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제출**
 - 제출서류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및 첨부서류
 - '08.1.1~'08.12.31동안 신규계약한 최초 계약금액 20억원이상 관공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함

■ **2009회계년도 기본회비 납부**

- 납부기한 : 2009. 4. 15까지
- 납부금액 : 토건업종 100만원, 기타 업종 각 50만원씩

사회보험요율 결정고시

국토해양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됨에 따라 동 보험요율을 공사원가에 반영을 신설했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09. 2. 12)하고 고시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다.

< 사회보험요율 변경연양 >

구분	개정 전	개정	비고
고용보험	1등급 ~ 5등급: 1.17% ~ 0.67%	좌 동	노무비x율
산재보험	3.6%	3.4%	노무비x율
국민연금	2.43%	좌 동	직접노무비x율
건강보험	1.49%	좌 동	직접노무비x율
노인장기요양보험	-	4.78%	건강보험료x율 <신설>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범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행위

1. 문제점

통상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이 발행하거나 공사대금조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할인한 어음 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경우에 할인을 의뢰한 업체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니다.

2. 어음(수표)의 할인행위의 성격

- 가.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것(금전소비대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음 자체를 매매(어음매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나. 위 법적성질이 금전소비대차관계라면 할인한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면 할인을 의뢰한 자는 할인받은 금전에 대하여 반환채임을 지지만, 단순히 어음매매관계라면 부도가 나더라도 할인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등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3. 판례의 태도

가.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해 준 경우

금융기관에서 하는 어음할인의 경우의 그 법적성질은 금융기관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액면금액에서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아 어음할인이 있으면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소지인이 된 금융기관과 어음의 발행인간에 어음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므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어음을 할인한 자가 그 외에 특별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5.2.13. 선고 84다카1832 판결)

나. 개인이 어음을 할인해 준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봅니다.

다. **구체적인 예**(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개인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받고는 거의 대부분 그 상대방이 발행인으로 된 용통어음과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에서 만기 등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형태로 할인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개인으로서의 그 어음 또는 수표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의뢰인인 그 상대방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서 그 상대방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인과 그 상대방 간에는 어음 및 수표의 액면 상당 금액에 대한 원인관계인 계약이 체결되고, 그 어음 및 수표는 그와 같은 각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결 어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해 준 경우에는 이는 일종의 어음매매로서 할인해 준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할인받은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반면 개인이 어음을 할인해 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어음매매'관계라고 할 수 없고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9. 2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781,000	786,000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로 재장사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고철가의 거둬들인 등락으로 가격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2월 4%인상되었으나 수급은 원활함
		D13mm	771,000	776,000	
		D16mm	765,000	771,000	
	고장력 철근	D10mm	786,000	791,000	
		D13mm	776,000	781,000	
		D16mm	770,000	776,000	
후판	SM490B	1,265,000	1,145,000	세계경기침체로 4월철광석가격 재개약시 20~30%인하 예상되며 이로인하여 가격 인하소지 있음	
H형강	100X100X6X8mm	890,000	930,000	가격동향은 철근과 유사하며 수급사정도 양호함	
	300X300X10X15mm	890,000	930,000		
	400X400X13X21mm	950,000	99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300	3,300	유연탄가 인상으로 가격인상요인 있으나 수요감소로 수급 원활함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9,700	49,700	0단위:m ³ 0현장도착도	
	#467(40-240-15)	48,700	48,700		
벽돌	㉔190X90X57mm	45	45	수급사정 원활함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수요감소로 전체적인 수급에 현재 큰 어려움 없음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1,020	환율 상승으로 가격 15% 인상되었으나 수급은 원활함
	판재	1.8~3.6X30 X3~3.6	1,000	1,180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7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0	61	13	3	167	+2

※ 신규3, 전입2, 전출3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엠에스건설(주)	건축030420	이 상 창	2009.02.02	592-6950
(주)나우건설	건축030007	성 홍 경	2009.02.05	751-8600
에스알건설	토목030008 조경130002	이 중 윤	2009.02.09	382-8180

■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대창종합건설(주) (전남에서)	토건1970	이 창 현	2009.01.29	762-2701
대농이앤지(주) (전남에서)	토목150197	박 은 숙	2009.02.09	634-0711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 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월 (2009.02.01~02.28)	0	2	13	0	15
누계 (2009.01.01~02.28)	1	4	20	1	26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도화종합건설	대구 수성구 범어동 561-1, 4층	대구 수성구 범어동 561-1, 7층	553-8001
대표자 소재지	거원종합건설(주)	이 상 곤 대구 수성구 상동 610-31	허 미 자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337-15	033-731-8105
상호 대표자 소재지	(주)거 흥	(주)태일건설 강 성 희 대구 수성구 상동 610-31	(주)거 흥 김 창 영 강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337-15	033-731-8106
대표자	(주)대 일	곽선희, 김진해	곽 선 희	751-3368
소재지	가창종합건설(주)	대구 달성군 가창면 남천리 380-33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90	054-371-6296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설명회 개최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이 2009. 3. 31(화)로 다가옴에 따라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등 제반업무에 대한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 2009. 3. 6(금) 15:00~17:00

○장소 : 대구시민회관 소강당

◆ 제1회<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과정>실시

○교육목적 : 초보자를 위하여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회계원리, 전표작성에서부터 공사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고 실무처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교육일시 : 2009.3.31(화)~4.3(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고용보험에서 10만원정도 환급지원)

○문 의 :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교육담당 직통 (02)3485-8252



회 장 동 정

※ 본회 제18차 이사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2. 4(수) 10:30,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 하신일 :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지역제한기준금상향에 따른 대책 협의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 간담회 주제

- 일시 및 장소 : 2009. 2. 9(월) 18:30, 길조한정식
- 하신일 : 지역건설업 현황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 건의

※ 본회 시도회장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 17(화) 18:30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 하신일 : 본회 총회 의안 조정 및 현안사항 협의

※ 본회 제51회 정기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 18(수) 10:30 본회 2층 중회의실
- 하신일 :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 부의사항 의결

※ 건설공제조합 정기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 18(수) 14:00 본회 2층 대회의실

※ 대구상의 의원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 18(수) 16:00 대구 파크호텔 목련홀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십시오